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7. 14 선고 2023가단524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준홍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11.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633584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4,784,225원과 그중 3,027,348원에 대하여는 2018.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98,965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4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792865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6. 20.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6,607,213원과 그중 4,992,896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7.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여수지법원 2020가소16019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5. 12.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653,268원과 그중 1,979,654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1. 5.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C의 아버지 D은 2018. 12. 2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E과 자녀인 F, 피고, C, G가 D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E 상속지분: 3/11, F, 피고, C, G: 각 2/11).

D의 상속인들은 2022. 11. 1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는 2022.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6호증, 법원행정처장, H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2/11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C의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아버지 D의 사망 후 피고가 어머니 E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살면서 위독한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였으며, 계속 어머니를 부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 1에서 5호증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분할약정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1008조의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는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분할약정을 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 산정 합의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재현

부동산 목록

1. 여수시 I 대 83㎡
2. 여수시 I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테이트지붕 단층 주택 44.93㎡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스테이트지붕 단층 광 3㎡
시멘트 블록조 스테이트지붕 단층 광 1.5㎡, 끝.

